

세종 공정거래 소식지

August 9, 2021

저희 법무법인(유) 세종 공정거래그룹에서는 앞으로 주요 공정거래 관련 규제 동향이나 뉴스를 정리하여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슈	주요내용
I. 보도자료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 28.	• (이슈)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2021. 11. 19. 시행)을 위해 (i)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ii)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 (iii) 일부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 (iv)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6. 28. 부터 8. 9.까지 입법예고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 조사 실시 6. 28.	• (이슈) 6개 업종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6. 28. 부터 8. 23.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7. 1.	• (이슈)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 (주요내용) 공정위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고 공개

이슈	주요내용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 개정 7. 8.	• (이슈)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제·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 14.	• (이슈)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 • (주요내용)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를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 23.까지 입법 예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7. 22.	• (이슈)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 (주요내용) 공정위 등 관계부처는 서울·경기 지역 배달대행업체를 대상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인증제 도입, 표준계약서 보급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 23.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본회의에서 (i)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 완화, (ii)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iii)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의결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 조사 실시 7. 26.	• (이슈)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 (주요내용) 공정위는 7. 26. 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7. 28.	• (이슈)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 (주요내용) 공정위는 8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15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시정권고
II. 주요 소식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 개최 6. 29.	• (이슈)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 • (주요내용) 공정위 관계자는 실물상품(용기, 포장 등)에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를 표시하게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도 통신판매 수단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힘
국회 정무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7. 1.	• (이슈)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는 7. 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

이슈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집단규제·플랫폼 규제·암호화폐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의견 표명 7. 5.	• (이슈) 대기업집단 규제·플랫폼 규제·암호화폐 불공정 약관 정책 추진 방향 • (주요내용)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대기업집단 규제·플랫폼 규제·암호화폐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한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공정위, 담합 등 사건정보 디지털화 추진 7. 5.	• (이슈) 사건정보 디지털화 추진 • (주요내용) 공정위는 사건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정거래 데이터포털’ 구축 작업에 착수하고 일부 자료를 민간에도 공유하겠다고 밝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단체구성·협의요청권’ 쟁점 7. 6.	• (이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단체구성·협의요청권 관련 • (주요내용) 공정위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법안에 대한 병합 심사가 예정된 가운데,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 요청권이 부여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7. 9.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 (제4회) • (주요내용) 공정위는 위해방지 조치의무,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에 대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
공정위, 연구 용역 발주 7. 9.	• (이슈) 디지털 경제 관련 연구용역 발주 • (주요내용) 공정위는 ‘디지털경제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 및 정책 추진방향’ 및 ‘데이터 분야의 경쟁, 소비자 이슈와 공정거래질서 구축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
공정위, 데이터룸 열람 인원 최소화 7. 12.	• (이슈) 데이터룸 열람 인원 최소화 • (주요내용)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을 신청하며 데이터룸 이용을 요청한 사건에서 데이터룸을 개방하되 열람 가능 인원을 1명으로 제한
공정위, 예식업·숙박업계 등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 숙지 공문 발송 7. 14.	• (이슈) 코로나19와 위약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예식업·숙박업계 등에게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 위약금 감면을 권고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 발송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7. 20.	• (이슈)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동향 • (주요내용) 국회 과방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의결

이슈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7. 23.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세미나 (제5회) • (주요내용) 공정위는 앞으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 정의, C2C 거래에서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의무 규정,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 확대 규정, 사업자의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의 적절성에 대해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할 것이라고 설명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심포지엄 7. 27.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 심포지엄 • (주요내용)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
미국 FTC, 반독점법 집행원칙 수정 발표 7. 28.	• (이슈) 미국 경쟁당국의 플랫폼 규제 • (주요내용) 미국 FTC는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 반독점법 집행 기준을 수정하여, 표면상으로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지만 판매업체나 경쟁업체에 대한 관계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야기하는 행위들을 규제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짐
III. 국회 발의법안	
<u>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최인호 의원안) 국회제출</u> 6. 30.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농해수위 최인호 의원은 운송가맹 관련 수수료를 상한을 정하고 가맹본부에게 수수료를 결정, 변경시 협의의무를 부과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u>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 (이수진 의원안) 국회제출</u> 7. 1.	• (이슈) 불공정거래 등 피해자 지원기금법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법사위 이수진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자 또는 피해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u>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 (서일준 의원안) 국회제출</u> 7. 2.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기재위 서일준 의원은 기업의 자료제출 해태시의 기업결합신고 반려 규정과 공정위에게 적시 심사를 위해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한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이슈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 (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7. 6.	• (이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은 (i) 역외적용, (ii)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보고의무, (iii) 통신판매업자의 고지사항 추가, (iv) 검색결과·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의 공개, (v) 이용후기 수집·처리정보의 공개, (vi)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광고의 수신 선택, (vii) 국내대리인 제도의 도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7. 12.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은 (i)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 (ii)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규정, (iii) 동의의결 취소 요건에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자에게도 동의의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황운하 의원안) 국회제출 7. 14.	• (이슈) 하도급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위 황운하 의원은 공정위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인에게 그 신고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김영식 의원안) 국회제출 7. 16.	• (이슈)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소병철 의원안) 국회제출 7. 21.	• (이슈)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법사위 소병철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납품업자들에게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구자근 의원안) 국회제출 7. 27.	• (이슈) 가맹사업법 개정안 발의 • (주요내용) 국회 산자위 구자근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로 추가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세종 공정거래 소식 (2021년 7월)

I. 보도자료

1.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6. 28.)

- 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2021. 11. 19. 시행)을 위해 (i)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ii)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 (iii)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 (iv)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를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8. 9.까지 입법예고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개정안 주요 내용]

• 법개정에 따른 위임사항 반영 (안 제5조의5, 안 [별표 1])

-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 구체적으로 명시 (안 [별표 1] 제10호)

- (개정 근거) 개정 가맹사업법은 신규 정보공개서 등록 시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 (개정 내용)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하는 직영점 운영 경험 관련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직영점 목록 및 주소, 직영점 별 운영기간 및 직영점 평균 영업기간, 직영점별 매출액 및 직영점의 평균 매출액 등

-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 사유 규정 (안 제5조의5 제2항 등)

- (개정 근거)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영업표지(브랜드) 별로 직영점 운영 경험(1개 이상, 1년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사업방식이 이미 검증됐음이 인정되는 경우(시행령에서 구체화) 직영점 운영 의무에서 제외하고, 임원이 운영한 기간(시행령에서 구체화)도 직영점 운영 기간으로 인정
- (개정 내용) (i) 직영점 운영의무 예외 사유로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면허를 받은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 운영 경험이 1년 이상 있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ii) ‘같은 업종’에 속하는지 여부는 현행 정보공개서 등록 시 통용되고 있는 가맹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 표준양식에 관한 고시」)을 활용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iii) 임원이 점포를 운영한 기간 중 직영점 운영기간으로 인정하는 경우를 점포를 운영한 해당 임원이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일 현재에도 가맹본부의 임원인 경우로 한정

•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관련 정보제공 확대 (안 [별표 1] 제6호 바목 1, 2)

- (개정 배경) 현행법상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시 정보공개서에 온라인 채널 리스트 및 취급품목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어, 온라인 판매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가 가맹점주나 가맹희망자에게 충분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개정 내용)**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i) 가맹본부의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및 오프라인(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채널별 매출액 비중을 추가하고, (ii) 전체 취급 상품 중 가맹점 전용상품 및 온라인 전용상품의 비중을 추가
- **일부 과태료 부과권한의 일부 시·도지사 이양 (안 제35조)**
 -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집행을 위해 5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권한을 현재 정보공개서 등록 심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4개 시·도지사(서울, 경기, 부산, 인천)에 이양
 - * 예상매출액 서면교부 의무(법 제9조 제3항), 예상매출액 산정 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법 제9조 제4항),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법 제9조 제5항),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법 제9조 제6항),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법 제11조 제3항)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안 [별표 1] 제4호 가목)**
 - 현행 시행령은 정보공개서에 공정위의 시정권고 이상 조치를 받은 사실(정보공개서 등록취소 포함)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등록취소 사실도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판단되어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

2. 6개 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 실시 (6. 28.)

- 공정위는 한국개발연구원과 함께 8. 23.까지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
- 공정위는 6개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응답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2회에 걸쳐 발표(10월, 11월)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12월)할 예정

3.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 (7. 1.)

- 공정위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발간하고 누리집에 공개

4. 이미용, 교육서비스업 등 3개 업종 표준 가맹계약서 제·개정 (7. 8.)

- 공정위는 이미용, 교육서비스, 기타 서비스업 등 서비스업 분야 3개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
 - 이미용업종은 개별 업종 특성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가맹본부, 가맹점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거쳐 표준가맹계약서를 신규 제정하였고, 교육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업종은 기존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
 - 3개 업종 공통으로 10년 이상 장기점포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평가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계약 갱신을 거절하도록 하고, 영업 부진에 따른 가맹점주의 조기 계약 해지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조항을 도입함. 또한, 가맹점주의 필수교육 이수 의무(교육서비스·이미용), 회원 등록 및 전용교재 사용(교육서비스), 이미용 인력의 채용(이미용) 등 개별 업종 특성을 반영한 조항도 새로이 마련함
- 공정위는 하반기에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도소매업종에 대한 표준가맹계약서를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

5.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7. 14.)

-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8. 23.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선불식 할부계약 해당재화 추가)** 일부 상조업체 및 그 자회사는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해당 상품에 대해 할부거래법상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는 여행상품 및 가정의례상품을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재화에 추가하고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개정 이후 1년 이내에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도록 규정
 - * 현행법상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
 -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할부거래법은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의 최고한도를 이자제한법상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이자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최고한도가 연 20%로 인하되었기 때문에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도 연25%에서 연20%로 인하

6. 지역 배달대행업체-배달기사 간 계약서 점검 결과 발표 (7. 22.)

- 공정위, 국토부, 서울시·경기도와 조정원은 합동으로 서울·경기 지역에 위치한 지역 배달대행업체 163곳(주요 플랫폼을 이용하는 배달기사 50명 이상 업체)을 대상으로 지역 배달대행업체와 배달기사 간 계약서를 점검
- 점검 결과, 124개 업체는 표준계약서를 채택하거나 계약서를 자율적으로 시정하기로 함
 - 기존 계약서에서는 배달료 미지재, 일방적 수수료 변경, 불합리한 배상책임 규정, 계약해지 후 경업금지 의무 부과, 배달기사의 멀티호밍 차단,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문제조항들이 드러남
- 관계부처는 2021. 7. 27. 시행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사업자인증제를 도입하고 표준계약서를 보급할 계획

7.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7. 23.)

- 금번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i) 보호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요건 완화, (ii) 비밀유지협약 체결 의무화, (iii)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 도입 등임
-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기술자료 요건 완화 규정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고,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및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 도입 관련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주요 개정 내용]

• 기술자료 요건(비밀관리성) 완화 (안 제2조 제15항)

- **(개정 배경)** 하도급법상 기술유용행위의 보호대상인 기술자료는 기술성, 비밀관리성을 갖춘 자료에 한정되는데, 비밀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시설을 갖추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우 비밀관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 제기
- **(개정 내용)** 기술자료의 비밀관리성 요건을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되는 자료’로 완화(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과 동일)

•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화 (안 제12조의3 제3항)

- (개정 배경) 비밀유지계약은 수급사업자 기술자료의 중요한 보호장치임에도 원·수급사업자간 협상력 차이로 수급사업자가 체결을 요구하기가 어려운 상황
- (개정 내용)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함. 또한, 공정위가 표준비밀유지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 제도 도입(안 제35조의2 - 제35조의5)

-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되더라도 법원이 자료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그리고 법원이 자료제출 명령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자료를 근거로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다른 증거로 증명하기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

- 또한, 소송 과정에서 영업비밀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밀심리절차, 비밀유지명령,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등의 규정 마련
 - (비밀심리절차) 법원은 자료제출 거부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됨
 - (비밀유지명령) 법원이 소송으로 영업비밀을 알게 된 자에게 소송 수행 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 공개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 (소송기록 열람 청구 통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않은 제3자가 소송기록 열람을 청구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8. 2021년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7. 26.)

- 공정위는 7. 26. 부터 제조·용역·건설 업종 원사업자 1만개 및 수급사업자 9만개의 2020년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
 - (조사기간) (1만개 원사업자) 7. 26 ~ 8. 20., (9만개 수급사업자) 9. 16. ~ 10. 13.
 - (조사내용) 거래관행 개선정도,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조정 실태, 건의 및 개선 필요사항 등
-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말 공표될 예정

9. 8개 가상자산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7. 28.)

- 공정위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 인증을 획득한 16개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
-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현장조사 대상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용약관을 우선 심사하여 부당한 이용약관의 중지·해지 조항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 15개 불공정약관 유형에 대해 시정권고
- 나머지 서면조사 대상 거래소에 대해서도 사업자들이 제출한 이용약관을 검토 중에 있으며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를 올해 내에 마무리할 계획

II. 주요 소식

1.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 (6. 29.)

-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품안전정보원은 ‘온라인 플랫폼 무등록·무신고 식품영업의 효율적 관리 방안’ 세미나를 29일 개최
- 이날 세미나에서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현행 상품 정보제공 고시상 소비자는 식품의 생산·수입·판매자명은 확인 가능하나, 적법하게 등록·신고된 사업자가 제조한 상품인지는 확인이 불가하다”며 실물상품(용기, 포장 등)에 영업허가·신고·등록번호를 표시하게 할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도 통신판매 수단에 이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힘

2. 국회 정무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개최 (7. 1.)

- 국회 정무위는 국회(임시회) 전체회의에서 3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윤관석의원안, 전재수의원안, 김병욱의원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련 업계와 학계 진술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 공정위 사무처장도 참석하여 공정위안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
- 참가자들은 온라인플랫폼 위주의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나, 사업자의 연대책임 규정이나 검색순위 결정 기준 공개 등 논란이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가 과도하다는 주장과 적절하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섬
- 한편 공정위안과 관련하여, 공정위 사무처장은 (i) 현재 공정위안에 대해 사업자단체, 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 밝혔고, (ii) 공정위안 관련 공청회 개최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힘

3.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대기업집단규제·플랫폼 규제·암호화폐 불공정 약관 시정에 대한 의견 표명 (7. 5.)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인터뷰에서 대기업집단 규제·플랫폼 규제·암호화폐 불공정 약관 시정과 관련한 공정위의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

[주요 내용]

• 대기업집단 규제 관련

-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 이는 일감몰아주기 규제 확대·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에 대한 공정위 조사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보임
- 대기업집단 규제가 형평성, 일관성, 지속가능성을 가지고 운용될 수 있도록 현 동일인 제도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
- 일감나누기 자율준수기준 마련 등 연성규범을 통해 기업집단이 스스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공정위가 직접 법 집행에 나서기보다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지배구조 개선과 거래관행에 나설 수 있는 정책적 도구도 적극적으로 만들겠다고 언급

• 플랫폼 규제 관련

- 현재 이미 국회에 상정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은 플랫폼업체의 시장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입점업체 간 계약서를 만들고, 상품 노출 기준, 중개서비스 대가 사항 등 필수요건을 알리도록 한 것이라며 공정위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고, 문제가 생기면 플랫폼업체와 입점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협력에 나서도록 한 최소한의 룰이라고 설명

• 암호화폐 불공정약관 시정 관련

- 암호화폐거래소 약관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인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연내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 특히, 일부 업체가 ‘서버 점검이나 통신 불량으로 불가피하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는 책임이 없다’는 등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을 두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광범위한 사업자 면책·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힘

4. 공정위, 담합 등 사건정보 디지털화 추진 (7. 5.)

- 공정위는 사건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공정거래 데이터포털’ 구축 작업에 착수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건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통합해 사건처리 역량을 강화하고, 주요 통계나 지표 등의 일부 자료를 오픈소스로 민간에 공유하겠다고 밝힘
- 특히 개인정보 보호 등 이유로 민간에는 공개가 제한되던 사건 관련 정보도 ‘비식별화’ 작업을 거친 후 공개 범위를 순차적으로 넓힌다는 입장

5.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단체구성·협의요청권’ 쟁점 (7. 6.)

- 공정위와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관련 법안에 관한 병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이용사업자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부여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음
- 플랫폼 운영사업자들은 이용사업자들이 빈번히 거래조건 변경협의를 요청할 것이 우려되고, 이미 협의회를 통해 입점업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하고 있으므로 단체구성권과 협의요청권을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반해, 플랫폼 이용사업자들은 플랫폼 종류와 각 기업의 사업 내용이 다양한 상황에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하나에 모든 불공정거래에 관한 개선 사안을 담기 어려우므로 단체구성권과 거래조건 협의요청권이 법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

6.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제4회, 7. 9.)

-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소비자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 세미나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 규정(개정안 제20조 및 제30조 등),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개정안 제18조 등) 등의 문제점 및 바람직한 규율 방향 등에 대하여 토론
- 공정위 담당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 규정 및 맞춤형 광고에 대한 제재 규정 등에 대하여, 학계와 산업계의 다양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법안을 수정해 나아갈 계획임을 설명

7. 공정위, 디지털 경제 관련 연구 용역 발주 (7. 9.)

- 공정위는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소비자 이슈 및 정책 추진 방향’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여, (i) 디지털경제 현황 및 경쟁 소비자 이슈 분석, (ii) 경쟁·소비자 정책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에 대한 우리나라 법·제도적 대응의 적시성·적정성 여부 종합 평가, (iii) 디지털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장기적 경쟁·소비자 정책 방향 제시 등을 파악할 예정
- 아울러 공정위는 ‘데이터 분야의 경쟁, 소비자 이슈의 공정거래질서 구축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도 발주하여, (i) 데이터 관련 국내외의 산업·제도 동향 및 이슈, (ii) 데이터의 경쟁·소비자법적 개념 정립 방안, (iii) 플랫폼을 중심으로 축적되는 데이터의 보유·활용 이슈, (iv) 데이터 이동성 및 데이터 거래시장과 경쟁 촉진·소비자 권리 보호, (v) 디지털 분야 기업결합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신고·심사 기준 개선방안, (vi) 개인정보 침해 등과 관련한 이슈 및 경쟁·소비자 당국의 역할 검토 등을 파악할 예정

8. 공정위, 데이터룸 열람 인원 최소화 관련 (7. 12.)

- 공정위는 최근 심사보고서 첨부자료 열람 신청 사건에서 데이터룸을 개방하되 열람 가능 인원을 1명으로 제한
 - 공정위는 피심인의 방어권 강화를 위해 지난해 말 제한적 자료 열람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세종청사 내에 데이터룸을 개설. 제한적 자료 열람 제도는 피심인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에 한해 공정위 심의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된 영업비밀 자료의 열람을 허용하는 제도임. 해당 변호사는 최대 2주 동안 데이터룸에서 영업비밀 자료에 포함된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외부 유출은 엄격히 금지됨
 - 공정위는 (i) 제한적 자료 열람 제도가 도입 초기라 자료 제출자가 영업비밀 유출을 크게 우려하고 있고, (ii) 실제 유출이 될 경우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결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iii) 이의신청 열람 인원을 다수로 결정하면 자료 유출 시 책임소재 파악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열람 가능 인원을 1명으로 제한하였음
 - 공정위는 향후 사건의 성격, 증거자료의 분량·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열람 가능 인원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9. 공정위, 예식업·숙박업계 등에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 숙지 공문 발송 (7. 14.)

- 공정위는 예식업중앙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야놀자·여기어때·에어비앤비 등 숙박업 플랫폼사업자,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감면 기준(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짐
-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운영중인 고시로, 강제성은 없지만 당사자 사이 분쟁 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의 기준이 됨

10. 인앱결제강제 금지법, 국회 과방위 통과 (7. 20.).

- 국회 과방위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함. 이 날 법안 통합조정 과정에서, 동등접근권* 조항은 권고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기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짐
 - * 특정 앱마켓의 독점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가 자사 앱을 모든 앱마켓에 동등하게 등록해야 된다는 개념
- 공정위 부위원장은 기존 규제주체는 공정위인데 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방통위가 추가되면 중복 규제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표명

11.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제5회, 7. 23.)

- 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는 '전자상거래법 적용 범위와 차등적 규율의 적절성'이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세미나 개최
- 세미나에서는 (i)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 정의(안 제2조), (ii) C2C 거래에서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 의무 규정(안 제29조), (iii)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확대 규정(안 제3조), (iv) 사업자의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의 적절성에 대하여 토론
-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아래와 같이 법안을 수정할 계획임을 설명
 - **(전상법 개정안의 체계 및 용어 정의(안 제2조) 관련)** 최근의 거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통신판매” 등의 용어를 “온라인 플랫폼 거래” 등과 관련되는 용어로 수정하되, 실무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규율의 큰 틀에 대한 변화는 지양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임. 한편, 정보교환매개 플랫폼 등 정의가 불명확하다고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고 시행령 등을 통해서도 구체화할 예정
 - **(C2C 거래에서 신원정보 확인 및 제공의무 규정(안 제29조) 관련)** 소비자를 보호하면서도 개인정보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정보에 확인 및 제공 대상이 되는 정보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
 - **(인접지역 거래에서의 법 적용확대 규정(안 제3조) 관련)** 배달앱 플랫폼 등에 대하여도 전자상거래법상 의무가 부과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식품관리법상 위해방지 의무 등과 타법과 중첩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의무 범위에 대한 수정을 검토할 예정
 - **(사업자의 유형 및 규모에 따른 차등 규제 관련)** 사업자별로 감내할 수 있는 규제의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나, 소규모 플랫폼이라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실제로 작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소규모 플랫폼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적용을 면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는 입장

12.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심포지엄 개최 (7. 27.)

-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 규율체계 수립을 위한 입법과제’라는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관련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
- 세미나에서는 (i)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검색 순위 투명성에 대한 독일법과 유럽법에서의 새로운 규율, (ii) 유럽 연합에서의 타겟팅 광고, (iii) 2021년 한국의 전자상거래법 개정 논의와 플랫폼의 책임강화 경향, (iv) 온라인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위해방지 조치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토론이 이루어짐

13. 미국 FTC, 반독점법 집행원칙 수정 발표 (7. 28.)

- 미국 FTC는 리나 칸 신임 위원장 취임 2주만인 지난 7월 1일 반경쟁적 행위 유형의 다양화 추세에 맞추어 소비자 후생 극대화를 기준으로 했던 기존 반독점법 집행 기준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짐([FTC보도자료 링크](#))
 -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와 판매업체 간 거래를 중개하는 다면시장적 특성을 지니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소비자에게 무료 서비스나 대폭 할인을 제공하면서 데이터를 착취하고 판매업체에게 수수료를 크게 부과하는 이른바 ‘약탈적 가격 책정’ 등의 행위로 성장했다는 논란이 있음. 이에 FTC는 기존 소비자 후생 중심의 집행 기준으로는 이러한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부족하여 반독점법 집행 원칙을 수정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FTC법 제5조에 플랫폼 특유의 경쟁제한적 행위 유형을 추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집행기준과 함께 실질적 변화가 발생할지 지켜 볼 필요가 있음

III. 국회 발의법안

1.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최인호 의원안) 국회제출 (6. 30.)

- 국회 농해수위 최인호 의원은 가맹본부가 운송가맹점 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율의 한도를 정하고,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택시운수종사자단체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14조의3 및 제41조 제3항 제3호·제4호)을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2.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기금법 제정안(이수진 의원안) 국회제출 (7. 1.)

- 국회 법사위 이수진 의원은 공정거래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을 피해자 또는 피해기업 지원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거래 피해자 지원 기금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 제정안에는 공정위가 징수한 과징금의 50% 이하를 재원으로 피해자 지원기금을 설치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공정위 기금운용심의위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됨

3.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서일준 의원안) 국회제출 (7. 2.)

- 국회 기재위 서일준 의원은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관련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신고자가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정위 역시 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안 제11조)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4.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7. 6.)

-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은 (i)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을 적용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ii) 전자게시판서비스를 이용하는 통신판매업자등이 거짓·과장된 정보를 게재한 것을 확인한 경우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지체없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iii)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계약서에 다른 법률에 따른 재화 등의 판매와 관련된 허가·등록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iv) 검색결과를 제공할 때 광고 구분·표시 및 검색순위 기준을 공개하며, (v) 이용후기 수집·처리정보를 공개하고, (vi) 맞춤형 광고 여부의 표시와 일반적 검색결과·광고의 수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vii)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전자상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5.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송재호 의원안) 국회제출 (7. 12.)

- 국회 정무위 송재호 의원은 (i)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가 가상자산을 소유하는 경우 그 소유현황 및 목적 등을 공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벌금부과하는 규정(안 제30조의2 및 제126조), (ii)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의 기준을 시정방안의 유형과 소비자 피해구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명확히 정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90조제1항 후단), (iii) 동의의결의 취소 요건으로 해당 행위가 관련 법률의 제·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인해 적법하게 된 경우를 추가하고, 사업자에게도 동의의결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안 제91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6. 하도급법 일부개정안(황운하 의원안) 국회제출 (7. 14.)

- 국회 산자위 황운하 의원은 공정위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한 때에 신고인에게 그 신고 자체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안 제22조)을 신설하는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7.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김영식 의원안) 국회제출 (7. 16.)

- 국회 과방위 김영식 의원은 동의의결 신청 시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해당 행위의 중지 사실 및 자발적으로 추진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거짓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안 제89조 및 제124조)을 신설하는 공정거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8.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소병철 의원안) 국회제출 (7. 21.)

- 국회 법사위 소병철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기존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20일 이내로 개정(안 제8조 제1항)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9.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구자근 의원안) 국회제출 (7. 27.)

- 국회 산자위 구자근 의원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가맹금 인상을 금지행위로 추가(안 제12조 제1항 제3호의2 신설)하는 가맹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